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29.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3년 8월 1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4일

라. 상정일자: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3. 8. 28.)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유옥준)

가. 제안이유

○ 다자녀 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자녀 가족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절벽의 현실 속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사용료의 감면)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적용을 받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현행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에서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로 변경함.
- 검토 결과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24만 9천명으로 사상 처음 25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유일한 국가임.
 - 한편,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후 가장 높았던 반면, 둘째(30.5%)와 셋째(6.8%)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4.5%포인트, 1.4%포인트 감소하여 점차 아이를 한 명만 낳아 기르는 추세임.
 -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족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이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덩크족으로 살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1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구하는 한편 저출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98 호
----------	---------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족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7. 6.~7. 2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나목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30% 감면</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 <u>3명</u>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 ----- <u>2명</u> ----- -----</p> <p style="padding-left: 20px;">다.·라.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